

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30일

옥 천 군



1. 자치법규명: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

2. 폐지이유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세부 규정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어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「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의 폐지

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: 043)730-3053, FAX: (043)731-1984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의견제출

-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규칙 제 호

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

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규칙명 :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건